



# 중국의 경쟁법 집행 동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사무관 | 박 제 현\*

## I. 경쟁법 집행기구

중국은 2008년 8월 1일부터 반독점법(反壟斷法)을 시행한 후, 반독점기구를 국무원 반독점위원회(反壟斷委員會)와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구(國務院反壟斷執法機關)의 2원체제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 중 반독점법집행기구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국가발전 및 계획위원회'의 3개 부처 분담체제(三定方案)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전국 범위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은 반독점법집행기구(3개 부처)에서 직접 처리하고, 해당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 등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관련 부문에 집행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되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반독점기구별 기능 분담 현황〉

구 분		수 행 기 능
반독점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 의사협조기구(비의결기구)</li> <li>○ 경쟁정책 입안, 반독점지침 제정, 부처 간 집행업무를 협조·조정</li> </ul>
반독점법 집행기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반독점 및 반부정당경쟁집행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행정독점행위(단, 가격독점행위는 제외)</li> <li>○ 불공정거래행위(반부정당경쟁법 적용)</li> </ul>
	상무부(반독점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독점위원회 운영</li> <li>○ 기업결합 심사</li> </ul>
	국가발전및계획위원회 (가격감독검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독점행위(즉, 가격관련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행정독점행위)</li> </ul>

\*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 법학박사(경제법 전공)

## II. 집행 동향 및 주요사례

반독점법집행기구는 반독점법 시행 이후 1년여 동안 관련 세부규정을 제정하고, 국제 교류 및 내부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반독점법 집행기구별로 독점행위(기업결합,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 1. 기업결합(M&A)

「반독점법」 시행 후, 상무부에 접수된 기업결합 신고안건은 2009년 6월말 기준 약 100여건인데, 정식으로 신고 수리되어 반독점심사가 진행된 안건은 58건(58%)이다.

심사대상(58건) 중 46건에 대한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되었는데, 승인(无条件批准)된 안건은 41건(89.1%)이며, 조건부 승인(附加限制性条件批准)이나 금지(禁止) 결정된 안건은 5건(10.9%)으로 그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한편, 심사가 완료된 안건(46건) 중 외국기업과 관련된 기업결합이 69% 수준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금지나 조건부 승인된 기업결합 모두가 외국기업간 또는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인수 건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외국기업에 의한 국내시장 지배 및 독과점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결합 주요 심결사례<sup>1)</sup>〉

안 건	사정조치 주요내용
벨기에 INBEV의 미국 AB회사 주식취득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태적 조치(2008년 11월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당사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청도/주강맥주 회사에 대한 추가 지분 취득 제한</li> <li>- 향후 경쟁사업자인 화운설화/북경연정맥주회사의 주식취득 금지</li> <li>- 취득회사의 지배주주가 변동될 경우, 상무부에 통보의무 부과</li> </ul> </li> </ul>
미국 코카콜라의 중국 후이웬과즙회사 주식취득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적 조치(2009년 3월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인수 금지(불허결정)</li> </ul> </li> </ul>

1) 심결사례 중 “벨기에 INBEV회사의 미국 AB회사 주식취득 건” “미국 코카콜라회사의 중국 후이웬과즙회사 주식취득 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박제현, 중국의 경영자집중(기업결합)제도 연구, 경쟁저널 제142호, 2009년 1월”, “박제현, 미국 코카콜라의 중국 후이웬 인수금지에 대한 소고, 경쟁저널 제144호, 2009년 5월” 각각 참조

안 건	시정조치 주요내용
<p>일본 미쓰비시레이온의 영국 루사이트인터내셔널 주식취득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적(행태적) 조치(2009년 4월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득회사가 보유한 메타크릴산메틸(MMA) 상품의 생산시설 50%를 6개월 내에 제3자에게 5년간 분리</li> <li>* 기한 내에 분리되지 않을 경우, 상무부가 수탁인을 지정하여 취득회사의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li> <li>- 제3자에 대해 5년 동안 MMA 상품을 생산/관리원가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li> <li>- 양사는 분리이전까지 상호정보교환 금지 등 독립 운영 (→ 위반 시, 25만~5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li> <li>- 향후 5년간 추가적인 인수나 새로운 공장 건설 금지</li> </ul> </li> </ul>
<p>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델파이 영업양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태적 조치(2009년 9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자동차회사에 대해 직·간접으로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불합리한 거래조건(차별적 공급 등) 부가금지</li> <li>- 다른 경쟁업체의 영업비밀 보호, 제3자의 경쟁성 영업정보에 대한 상호교환 금지</li> <li>- 거래처(공급상) 전환 협조, 자동차부품 구입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조건 부과 등 차별적 취급행위 금지</li> <li>☞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참조</li> </ul> </li> </ul>
<p>미국 화이자의 와이어스 주식취득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적(행태적) 조치(2009년 9월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이자 브랜드의 돼지유행성페렴백신사업을 지정 수탁인을 통해 6개월 이내에 분리 매각</li> <li>* 분리매각사업은 유·무형자산(지적재산권을 포함)을 포함하며, 1명의 관리인을 임명·관리하되, 다른 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li> </ul> </li> <li>○ 분리 매각 후, 3년 동안 화이자는 구매자에게 합리적인 기술 지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 협조, 관련 직원에 대한 기술훈련 및 자문 업무를 제공할 의무 부과</li> <li>☞ 자세한 내용은 [붙임 2] 참조</li> </ul>

## 2.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카르텔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사례는 아직 없으나, 일부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내부조사는 비공개로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경쟁당국이 기(既) 조치한 우리기업의 독점행위에 대해서는 사전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2009년 1월 우리나라의 6개 TPA(폴리에스터 섬유의 범용원료) 수출업체가 중국 상무부(화석협회)의 반덤핑 피소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수출 물량 및 가격 합의를 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사전계도를 통해 국제카르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한 사례가 있다.

한편, 반독점법 시행 이전인 1999~2007년까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조사·처리한 업

중별 독점안건은 총 6,549건<sup>2)</sup>이며, 국가발전 및 계획위원회에서 2008년 1~11월까지 전국적으로 조사·처리한 「가격법(价格法)」 위반안건은 5만5,000건(위법금액은 총 20억元)으로 파악되고 있다.

### 3. 불공정거래행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2008년도에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위반으로 조사한 불공정거래행위는 총 4만1,301건으로, 그 중 시정조치 건수는 3만9,563건이며, 과태료 부과 또는 위법소득 몰수금액은 총 7억1,300만元に 이르고 있다. 조치유형별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60.2%(2만4,845건), 상업적 뇌물제공행위(즉, 리베이트 제공) 15.1%(6,227건) 순으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실례로 중국의 기아자동차가 2008년 1월부터 중개상(판매 대리점)에 대해 끼워팔기, 판매목표 강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혐의로 중국 상무부로부터 ‘자동차거래정책’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자동차수입허가증 발급업무를 중단조치<sup>3)</sup>당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반부정당경쟁법」이나 「소매상과 공급업체간의 공정거래관리방법」의 적용도 가능하다.

한편, 「소비자권익보호법(消费者权益保护法)」 위반 건수는 1만 3,169건, 「약관법(合同法)」 위반 건수는 2,281건에 달하고 있다.

### 4. 민사소송

반독점법 시행 후, 소비자 또는 중소기업들이 각 업종별 독과점사업자의 독점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 중 2009년 10월 현재 중국이동통신 등 2건의 민사소송이 종결되었으며, 중국왕통북경지사(中国网通北京分公司), 바이두(百度), 중국석유화학북경석유상품공사(中国石化北京石油产品公司)의 독점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 〈민사소송 사례〉

##### ① 중국이동통신 북경지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차별취급)에 대한 건

##### • 사건의 개요

중국이동통신<sup>4)</sup> 북경지사(中国移动通信集团北京有限公司, China Mobile)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2) 그 중 2006년도 이전에 조치한 지방보호, 지역봉쇄 등 경쟁을 배제·제한하는 행위는 490건이며, 2007년도에 전국적으로 조사·처리한 가격독점안건은 70여건이다.

3) 상세한 내용은 “박제현, 현대차집단중국유한회사의 ‘끼워팔기’ 등에 대한 소고, 경쟁저널 제141호, 2008년 11월” 참조

4) 중국이동통신은 중국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고객 수는 5억 명 수준이다.

남용하여 고객(全球通用戶)에 대해 매월 임대료(携号转月租费 약 50元) 및 전화·메시지 등의 통신서비스요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고객별로 월 임대료를 차별적으로 징수(差別对待)<sup>5)</sup>한다는 이유로 2009년 3월 4일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원고는 北京同天律师事务所律师周泽).

• 소송결과

북경시 동성구 인민법원의 화해조정으로 고객에게 부과하는 월 임대료 징수를 취소하고, 장려금명목으로 1,000元(146달러)을 지불<sup>6)</sup>하는 조건으로 2009년 10월 26일 종결처리 되었다.

② 성다인터넷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거래제한)에 대한 건

• 사건의 개요

성다인터넷(盛大网络, Shanda Interactive Entertainment)이 중국 인터넷문학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온라인 출판사의 거래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sup>7)</sup>(원고는 北京书生电子技术有限公司).

• 소송결과

상해시 제1중급인민법원(1심판결)은 중국 인터넷문학시장에서 피고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성립(증거 불충분 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25일 기각 처리하였다.

### III. 시사점

#### 1. 중국정부는 향후 경쟁법 집행을 강화할 전망

반독점법 시행 후, 다국적기업(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나 인텔 등)이나 국유기업 등 독과점 사업자의 독점행위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물가관리차원에서 카르텔(가격담합)행위나 일부 독과점 사업자들의 가격남용행위가 주요 조사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사업자 간의 가격정보 교환이나 생산물량 조율 등 독점협약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5) 피고는 다른 서비스(神州行、动感地带服务)의 월 임대료를 50元 미만의 수준으로 징수하였다.

6) 원고는 소장에서 위법 징수한 금액을 1,200원으로 주장하였다.

7) 원고는 성다인터넷의 중국 인터넷문학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80% 이상으로 주장하였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독점행위 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적용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제품(전자제품, D램 반도체, 건설기계 부문 등)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수준이므로 적극적인 사전대처가 필요하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한 가격행위규제 및 민사소송 제기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2. 중국현지기업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

반독점기구의 기능 분산, 집행 경험 및 전문 인력의 부족, 세부기준의 미흡 등으로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현지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교육을 통해 법 위반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조사를 받을 경우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기업의 권리나 불복절차, 자진신고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동의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결합을 추진할 경우는 협의(商談)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자국 산업(특히, 민족브랜드) 보호 등 최근 심사동향이나 국가안전심사대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3. 한·중 경쟁당국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

정부(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도 양국 경쟁당국간 협조체제를 조기 구축하고, 중국에 주재관을 파견해 상호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국기업에 대한 조사 착수시 통지의무나 상호 정보 교환 또는 집행과정에서의 협력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한중 FTA에 경쟁챕터(Chapter)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붙임 1]

## 미국 GM의 델파이 영업양수 사례<sup>8)</sup>

중국 상무부는 미국 GM의 델파이 기업결합(영업양수) 건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행태적 조치) 결정을 하고, 동 내용을 반독점법 제30조에 의거, 공고(중국 상무부, 공고 2009년 제76호, 2009년 9월 28일)하였다.

### 1. 안건의 개요(案情)

미국의 General Motors Company(美国通用汽车有限公司, 이하 “GM”이라 한다)<sup>9)</sup>는 Delphi Corporation(美国德尔福公司, 이하 “델파이”라고 한다)<sup>10)</sup>과 영업양수계약을 체결(2009년 7월 30일, 24억 달러)한 후, 중국 상무부에 기업결합을 신고(2009년 8월 18일)<sup>11)</sup>하였다.

### 2. 심사절차(审查程序)

#### (1) 신고수리(立案) 및 심사(审查)

상무부는 2009년 8월 18일 미국 GM의 델파이 기업결합(영업양수) 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2차례(8월 28일, 8월 31일)의 자료보정을 거쳐 신고수리(2009년 8월 31일)하였으며, 반독점법(反壟斷法) 및 기업결합(经营者集中) 관련 규정에 의거 2009년 9월 28일까지(심사기간 총 30일) 반독점심사(反壟斷审查)를 완료하였다.<sup>12)</sup>

#### (2) 이해관계자 의견수렴(征求意见)

상무부는 심사과정에서 신고자료의 확인 및 경쟁제한적인 중요 문제에 대해 심층 분석을 진행했으며,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 좌담회 개최, 당사자 면담 등의 방식을 통하여 관련 정부부문, 관련 사업자단체, 자동차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8)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公告2009年第76号(2009-09-28, 关于附条件批准通用汽车收购德尔福反壟斷审查决定的公告)

9) GM은 1908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업체로서, 34개국에서 승용자동차와 상업용 차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140개국에서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다.

10) 델파이는 모바일 전자장치와 운송시스템을 제공하는 세계 7위 수준의 자동차 부품회사로서, 1995년부터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의 거의 모든 자동차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에 17개의 계열회사 또는 합작회사(총 21개의 생산시설)를 운영하고 있다.

11) 우리나라는 당사회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2009년 10월 1일 통보하였다.

12) 당사회사가 제출한 신고서류가 완벽되어 있고, 상무부와 당사자 간에 제한조치협약이 원만히 이루어져 비교적 단기간(심사기간 총 30일) 내에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되었다.

### (3) 제한조치 협의(附加限制性条件的商谈)

심사 중 확인된 경쟁제한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무부는 당사회사와 제한조치(附加限制性条件)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협의과정에서 상무부는 당사회사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방안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당사회사는 이에 대한 자기의 견해와 해결방안(初步解决方案) 및 그 수정방안을 각각 제출하였다. 상무부는 이를 평가한 후, 이 해결방안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해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 3. 경쟁제한성 심사(竞争问题)

### (1) 관련 시장(相关市场)의 획정

#### ① 상품시장(相关产品市场)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영위하는 상품과 서비스 간에는 수평결합(横向重叠)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상·하방시장(上下游市场)에서는 수직결합(纵向关系)이 발생한다.

당사회사가 각각 취급하는 상품에 근거하여 관련 시장을 획정하면, GM의 관련 상품시장은 승용자동차시장(汽车乘用车市场)과 상용자동차시장(汽车商用车市场)으로 획정하며, 델파이 관련 상품시장은 10개의 독립된 자동차부품시장(汽车零部件市场)으로 획정한다.

즉, 자동차부품시장은 자동차 전자전기전송시스템시장(汽车电子电气传输系统市场), 자동차 연결시스템시장(汽车连接系统市场), 자동차 전기센터시장(汽车电气中心市场), 자동차 에너지시스템시장(汽车热能系统市场), 자동차 오락 및 통신시장(汽车娱乐和通信市场), 자동차 제어 및 안전시장(汽车控制和安全市场), 자동차 안전시스템시장(汽车安全系统市场), 자동차 가솔린엔진관리시스템시장(汽车汽油发动机管理系统市场), 자동차 디젤엔진관리시스템시장(汽车柴油发动机管理系统市场), 자동차 연료 공급 및 증발상품시장(汽车燃料供给和蒸发产品市场)으로 세분하여 획정한다.

#### ② 지역시장(相关地域市场)

관련 지역시장은 중국 국내시장으로 획정하였다.

### (2) 경쟁제한성 여부 검토

#### ①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상무부는 「반독점법」 제27조(반독점심사 고려요인)에 의거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고려요인은 다음과 같다.



- 가.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및 그 시장에 대한 통제력
- 나. 관련 시장의 시장집중도
- 다. 기업결합이 시장 진입이나 기술 진보에 미치는 영향
- 라. 기업결합이 소비자 및 다른 경영자에 대해 미치는 영향
- 마. 기업결합이 국민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 바. 기타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② 경쟁제한성 여부

상무부는 「반독점법」에 의거, 이 기업결합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경쟁제한적인 문제(競争忌注)가 있음을 잠정 확인(初步确认)하였다.

즉, GM이 전 세계 및 중국 자동차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델파이가 전 세계 및 중국 자동차 부품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 및 성장 추세인 점, 그리고 중국 관련 시장의 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기업결합은 다음과 같이 경쟁을 배제·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 가. 델파이는 중국의 다수 자동차완성차공장(多家整车厂)에 대한 독점공급업체(独家供应商)이다. 따라서 결합 후, 당사회사의 지배관계(控股关系) 및 상호이익(利益一致性)을 감안할 때, 델파이가 국내의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부품 공급의 안정성, 가격 및 품질 면에서 불리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바, 이로 인한 국내 자동차시장의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 나. 결합 후, 당사회사의 지배관계, 상호이익 및 GM의 델파이 이사회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국내 자동차시장의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델파이가 파악하고 있는 국내의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의 연구개발기술, 차량모델자료 등 경쟁정보를 GM이 취득할 수 없도록 조치(确保)할 필요가 있다.
- 다. 결합 후, 당사회사가 지배관계 및 상호이익을 고려하여 국내의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부품공급업체를 전환할 때, 델파이가 지연 및 비협조전략을 취함으로써 전환비용이 높아지게 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로 인한 국내 자동차시장의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 라. 결합 후, 당사회사의 지배관계 및 상호이익에 기초하여 GM은 향후 델파이로부터의 자동차 부품 구매를 늘려 국내의 다른 부품기업이 GM의 구매경로에 진입하는 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내의 다른 부품업체들로 하여금 델파이보다 불리한 지위에 처하게 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의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것이다.

#### 4. 심사결정(审查决定)

상무부는 상술한 원인과 「반독점법」 제28조 및 제29조<sup>13)</sup>에 근거하여 이 기업결합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며, 중국 자동차완성차시장(中国汽车整车市场) 및 그 상류자동차부품시장의 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당사회사가 규정한 시간 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하였으며, 이 방안이 기본적으로 상무부가 우려한 경쟁제한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무부는 그 해결방안을 접수하는 한편, 이 기업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승인(附加限制性条件批准)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 ① 결합 후, 당사회사는 델파이 및 그가 지배하는 관련기업이 향후 계속하여 중국 자동차제조업체에 대하여 차별 없는 부품 공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예전처럼 부품 공급의 적시성(及时性), 신뢰성(可靠性) 및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부품 공급의 가격 및 수량은 시장규칙과 기존 협약(已达成的协议)에 따라 결정하며, 직·간접으로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결합 후, GM은 델파이가 획득한 국내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쟁성 비밀정보를 불법으로 이용(非法寻求)하여서는 아니 되며, 델파이도 GM에게 자기가 파악한 국내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쟁성 비밀정보를 불법으로 유출(披露)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당사회사는 공식 또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제3자의 경쟁성 비밀정보를 불법으로 상호 교환하거나 공유(沟通)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결합 후, 당사회사는 델파이 및 그가 지배하는 관련 기업이 고객의 합법적인 요구에 응하여 고객이 안정적으로 공급업체를 전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로 지연하거나 제한 조건을 부가(设置、主张)함으로써 다른 완성차 제조업체의 전환비용을 높여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결합 후, GM은 모든 자동차 부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다원화(多源供应) 및 차별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GM의 관련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한 차별 없이 구매하여야 하며, 델파이에는 유리하지만 다른 공급업체는 불리한 불합리한 조건을 특별히 제정(专门制定)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이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2009년 9월 28일)부터 당사회사는 상술한 제한조건의 준수상황을 상무부에 정기적(定期)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당사회사가 만약 상술한 제한조건을 어는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상무부는 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것이다.

13) 「반독점법」 제28조는 “경쟁자집중이 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거나 가질 수 있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경쟁자집중에 대하여 금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자가 그 집중이 경쟁에 미치는 유리한 영향(有利影响)이 불리한 영향(不利影响)보다 현저하게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거나 사회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경쟁자집중에 대하여 금지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는 “금지하지 않는 경쟁자집중에 대해서도 국무원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경쟁자집중이 경쟁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한성 조건을 부가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붙임 2]

## 미국 화이자의 와이어스 주식취득 사례<sup>14)</sup>

중국 상무부는 미국 화이자의 와이어스 기업결합 건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행태적 조치)결정을 하고, 동 내용을 반독점법 제30조에 의거, 공고(중국 상무부, 공고 2009년 제77호, 2009.9.29.)하였다.

### 1. 안건의 개요(案情)

미국의 화이자(Pfizer, 美国辉瑞公司, 이하 “화이자”라고 한다)<sup>15)</sup>는 2009년 1월 25일 와이어스(Wyeth, 美国惠氏公司, 이하 “와이어스”라고 한다)와 주식취득계약을 체결(지분율 100%, 신주인수방식, 680억 달러)한 후, 중국 상무부에 기업결합을 신고(2009년 6월 9일)<sup>16)</sup>하였다.

### 2. 심사절차(审查程序)

#### (1) 신고수리(立案)

상무부는 2009년 6월 9일 미국 화이자의 와이어스 기업결합 건(美国辉瑞公司收购惠氏公司经营 者集中申报案件)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2차례(6월 11일, 6월 14일)의 자료보정을 거쳐 신고수리(2009년 6월 15일)하였다.

#### (2) 기초심사(初步审查) 및 중점심사(进一步审查)

상무부는 반독점법(反垄断法) 및 기업결합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2009년 7월 15일까지 기초심사(初步审查)를 진행한 결과, 이 기업결합이 동물보건의약품시장(动物保健品领域)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9년 10월 13일까지 중점심사(进一步审查)를 진행하였다.

#### (3) 의견수렴(征求意见) 및 협의(磋商)

상무부는 심사과정에서 신고자료의 확인 및 경쟁제한적인 문제에 대한 심층분석을 진행하였

14)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公告2009年第77号(2009-09-29, 关于附条件批准辉瑞公司收购惠氏公司反垄断审查决定的公告)

15) 화이자는 제약업계 세계 1위(연간매출액 500억 달러)이며, 와이어스는 세계 10위(연간매출액 200억 달러) 수준이다.

16) 미국과 EU는 동물약품분야의 일부 자산매각을 조건으로 승인(EU 7월, 미국 FTC 10월)하였다. 우리나라는 주식취득(유상증자참여, 2009년 10월 15일) 이후 사후신고(2009년 10월 16일)되었으며,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으며, 다양한 방식[논증회(论证会)·좌담회·공청회(听证会) 개최, 서면의견 청취, 현지조사 및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관련 정부부문, 사업자단체, 경쟁사업자, 상·하류기업 등)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관련 시장(个别产品)에 존재하는 경쟁제한성 문제에 대하여 상무부와 신고회사가 충분한 협의(磋商)를 통하여 경쟁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하여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3. 경쟁제한성 심사(竞争问题)

#### (1) 관련 시장(相关市场)의 확정

##### ① 상품시장(相关产品市场)

관련 상품시장은 당사회사가 취급하는 인체약품(人类药品)과 동물보건의약품(动物保健品)으로 확정하며, 그 중 동물보건의약품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쟁관계의 상품(重合产品)이 존재한다.(즉, 수평결합)

가. 인체약품 : JIC(광보페니실린, 广谱青霉素), N6A(우울증 해소 및 정서안정제, 抗抑郁和情绪稳定剂)

나. 동물보건의약품 : 돼지유행성폐렴백신(猪支原体肺炎疫苗), 돼지유사광견병백신 및 개용 혼합백신(猪伪狂犬病疫苗以及犬用联苗, Canine Vaccine)

##### ② 지역시장(相关地域市场)

관련 지역시장은 중국 국내시장(즉, 중국대륙지역을 의미하며,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은 포함하지 않음)으로 확정하였다.

#### (2) 경쟁제한성 여부 검토

##### ①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상무부는 반독점법 제27조(반독점심사 고려요인)에 의거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했는데, 그 구체적인 고려요인은 다음과 같다.

가.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경영자의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및 그 시장에 대한 통제력

나. 관련 시장의 시장집중도

다. 기업결합이 시장 진입이나 기술 진보에 미치는 영향

- 라. 기업결합이 소비자 및 다른 경영자에 대해 미치는 영향
- 마. 기업결합이 국민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② 경쟁제한성 여부

상무부는 심사 결과, 관련 상품 중에서 인체약품시장과 동물보건의약품 중 돼지유행성페렴백신 및 개용혼합백신시장에서는 결합 이후 시장의 경쟁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지만, 돼지유행성페렴백신시장의 경우에는 결합 이후에 다음과 같이 시장의 경쟁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여 장차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 시장점유율의 현저한 증가(市场份额明显增加)

결합 후, 당사회사의 관련 시장점유율이 49.4%(화이자 38.0%, 와이어스 11.4%)로서 다른 경쟁사업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2위 사업자(英特威)의 시장점유율은 18.4%, 다른 경쟁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모두 10% 미만의 수준이다. 따라서 결합 후, 당사회사는 장차 그 규모효과를 이용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나아가 상품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나. 시장집중도의 현저한 증가(市场集中度明显提高)

결합 후, 중국 돼지유행성페렴백신시장은 허핀달-허쉬만지수(HHI)가 2,182이며, HHI 증가분이 336이므로 고집중시장에 속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기업결합은 장차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다. 진입장벽의 증가(市场进入将更加困难)

약품 연구개발의 특징은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연구개발기간도 길다(成本高和周期长)는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하나의 신상품을 연구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략 3~10년의 시간과 250만~1,000만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시장조사 결과, 돼지유행성페렴백신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장벽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는 그 규모 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중국시장을 추가 확장하고 다른 경쟁사업자를 억압(打压)하며, 관련 시장에서 다른 기업의 발전을 제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4. 심사결정(审查决定)

상무부는 기업결합 후, 장차 중국의 돼지유행성페렴백신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관련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불리한 영향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고, 화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였다.

- ① 중국 국내시장(즉, 중국대륙지역을 의미하며,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은 포함하지 않음)에서 화이자 브랜드인 'RespiSure'(瑞倍适) 및 'RespiSure One'(瑞倍适-旺)의 돼지유행성 폐렴백신사업을 분리 매각(剥离)하여야 한다.
- ② 분리 매각되는 사업에는 그 생존 및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유·무형자산(지적재산권을 포함)을 포함한다.
- ③ 화이자는 상무부가 이 기업결합을 승인한 후, 6개월 내에 반드시 분리 매각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수탁인을 통하여 구매자를 물색, 매매계약을 체결(签订买卖协议)하여야 한다.
- ④ 구매자는 반드시 이 기업결합 당사회사로부터 독립되고 전술한 자격기준에 부합되며, 상무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 ⑤ 만약, 화이자가 동 기간 내에 구매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상무부는 최저가로 분리매각 처리(无底价方式处置被剥离业务)할 수 있는 새로운 수탁인을 지정할 권리가 있다.
- ⑥ 동 기간 동안 화이자는 반드시 1명의 과도기간 관리인(过渡期间经理)을 임명하여 분리매각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업무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管理应以拟剥离业务利益最大化为原则)하여야 하고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생존과 시장성 및 경쟁력을 구비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계속(保留)하는 다른 업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⑦ 분리 매각 후 3년 동안 화이자는 구매자의 청구(请求)에 따라 합리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돼지유행성폐렴백신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에 협조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관련 직원에 대하여 기술훈련 및 자문 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붙임자료인 '미국 GM의 델파이 영업양수 사례'와 '미국 화이자의 와이어스 주식취득 사례'의 중국 상무부 공고 원문은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홈페이지 [www.kfcf.or.kr](http://www.kfcf.or.kr)의 'SOS자료실' 메뉴 중 '연합화자료실'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